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상속재산은 불평등하게 나뉘라

(『相続財産は不平等に分けなさい』翻譯論文)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韓日科

吳 慧 玲

2021年 2月

상속재산은 불평등하게 나눠라

(『相続財産は不平等に分けなさい』翻譯論文)

지도교수 이 예 안

오 혜 령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2월

오혜령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_____ ①

위 원_____ ①

위 원_____ ①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20년 12월

역자서문

상속 관련 서적을 검색하면 법률 전문 서적이 많이 나온다. 수많은 책을 훑어보다가 눈에 들어온 ‘상속재산은 불평등하게 나뉘라’. 제목부터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 책은 법률 서적이 아니다. 다년간 상속업무 경험을 정리한 실용서이며 상속을 언젠가는 경험할 많은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입문서이다. 상속에 대해 알아보는 단계에 있거나 상속 분야에서 실무를 시작하는 초보자들이 읽기에 좋은 책이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상속을 보다 많이 받을 것인가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추천하지 않는다. 저자의 초점은 상속인 개개인의 이익을 어떻게 최대화할 것인지에 있지 않다. 오히려 피상속인 즉 부모의 입장에서 물려줄 재산이 온전히 지켜지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몇 차례의 상속을 거치는 동안 소중한 재산이 공중분해되는 사례를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독자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조언한다.

상속은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나 누구나 경험한다. 피상속인의 입장이든, 상속인의 입장이든 미리 대비하는 마음으로 읽어본다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상속은 먼 얘기라며 살아온 이들에게는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상속을 곧 앞둔 이들에게는 기본적인 절차와 순서 등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제시한다.

주변을 돌아보면 상속의 문제는 자산가들에게만 있지 않으며 생각보다 가까이, 아니 당장 우리 자신에게도 있다. 성실히 모아온 만큼 소중한 재산이 잘 지켜지도록 상속의 때를 대비하며 분쟁이 없는 방법으로 분할이 되도록 이 책을 통해 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이 논문을 위해 정성껏 지도해주시고 세심한 심사를 해주신 교수님들과 아낌없이 지원하며 배려해준 가족들,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격려해준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20년 12월

오혜령

국문초록

현대 우리 사회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평등에 민감하다. 상속의 경우에도 똑같이 나누어 갖지 않으면 불편하다. 평등하게 상속받기 가장 좋은 방법은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분이다. 이 책은 법정상속분과 같은 평등한 상속 방식에 어떠한 폐해가 있는지 조목조목 설명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가장 큰 고민은 세금일 것이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자산가들은 빈 땅에 건물을 지어 임대를 준다. 임대를 준 만큼 토지의 평가액은 낮아지고 상속세는 줄어든다. 하지만 절세 대책으로 시작한 임대 사업으로 인해 막상 상속이 발생했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타난다. 이 책에서는 구체적인 실패 사례를 들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 방법으로 불평등한 상속을 강조하고 있지만 동시에 공평함을 추구한다. 피상속인에 대한 생전 상속인의 기여도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과 비용을 가시화하여 집안을 이어갈 상속인에게 불평등하게, 그러나 더욱 공평하게 나눌 것을 호소한다. 상속인 모두가 공평하다 느끼며 납득할 수 있는, 분쟁 없는 상속을 목표로 한다.

일러두기

- 원문에는 괄호 표기가 다수 있으나 가독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괄호 안 내용을 문장 안에 풀어 썼다.
- 원문의 '아파트(アパート)'라는 표현은 한국에서의 의미가 달라 본서에서는 '다세대 주택'으로 표기했다.
- 통화 단위는 원(won)으로 환산하지 않고 엔(yen)을 그대로 사용했다.
- 인명의 외래어 표기는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랐다.

목 차

역자서문

국문초록

머리말 7

[제1장] 상속분쟁은 왜 일어나는가 9

상속분쟁은 왜 일어나는가 9

너무 강해진 평등의식 10

부모의 자산은 내 것!? 12

주요 자산을 물려받는 본가(장남이나 장녀)와의 현저한 인식의 차이 12

상속에 대한 잘못된 인식 13

절세를 전제로 한 잘못된 상속대책 15

절세 그리고 제안 영업의 함정 15

진정성 없는 상속대책에 현혹되지 말라 18

상속 관련 행사장에서 생긴 일 19

연계형 세무사가 늘고 있다 20

부채만 남은 자산의 증가, 분쟁의 불씨로 22

절세는 됐지만 납세는 하지 못해 23

건축한 수익성 물건을 팔아버리는 지경까지 23

[제2장] 평등상속의 방법으로는 다룰 수밖에 없다 27

평등상속을 목표로 하면 문제가 생긴다 27

민법(상속관련) 개정으로 보는 평등의식의 폐해	30
평등상속으로 ‘혼외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31
유산 총액이 적은 사람이 상속 분쟁을 하는 진짜 이유는?	32
후계자에게 상속재산을 하나로 몰아주는 편이 좋은 네 가지 전형적인 예	35
<칼럼> 생산녹지를 임대해도 납세유예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37
[제3장] 불평등 상속의 추천	41
상속은 불평등하게 해라	41
법정상속을 고집한 결과 재산을 19명이 공유하게 되다	43
평등상속이 아닌 불평등(공평) 상속이라는 발상	44
불평등=공평(공정)을 목표로 하다	46
[제4장] 불평등 상속을 실현하기 위한 다섯 가지 포인트	48
다섯 가지 포인트를 잘 지키면 불평등 상속을 실현할 수 있다	48
포인트① 상속인을 알아보고 재산을 확인해본다	48
상속인을 알기 위해 가계도를 만든다	48
대습상속인, 이혼하고 친권을 빼앗긴 자녀의 사례	50
가계도를 작성했다면 상속재산을 조사한다	51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도 포함되는가?	54
특별수익에 상당하는 생전 증여에도 주의하라	55
돌봄에 드는 비용을 수치화하라	55

머리말

‘상속 다툼은 부자들이나 겪는 문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는 사실 큰 오해입니다.

대법원의 사법 통계(2016년)에서 유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정법원에 신청한 유산분할 사건의 금액별 건수를 보면, 유산금액 1,000만 엔 이하가 33.1%, 1,000만 엔에서 5,000만 엔 이하가 42.4%. 즉 법원에 접수되는 유산분할 사건의 75% 이상은 유산금액 5,000만 엔 이하의 사건입니다. 상속 다툼은 나눌 재산이 적은 사람일수록 다툼이 더 심각합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저는 상속재산을 평등하게 법정상속분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에 갈등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상속재산을 평등하게 법정상속분으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속대책 관련 재산 컨설팅을 약 20년 동안 해오면서 1,000건 이상의 상속세 신고서를 봤습니다만 실무상으로는 평등하게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담당한 상속사건 중 법정상속분으로 평등하게 분할된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속은 원만하게 유산분할을 완료했습니다. 현대사회의 풍조인 ‘법정상속분으로 나누는 평등상속’ 개념으로는 상속 다툼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정상속분으로 나누는 평등상속’ 방식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상속 분쟁은 점점 늘어날 뿐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속으로 인한 다툼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불평등 상속’에 있습니다.

상속에서는 ‘불평등 배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불평등’이란 언뜻 생각하기에 원만한 방식이 아닌 듯하지만 ‘기계적인 평등은 배제하고 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나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라는 분배방식만 제대로 마련한

다면 절세대책도 자연스럽게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12년 동안 주택건설업체에서 상속세 대책을 제안하는 영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상속대책 중 가장 좋은 방법은 다세대 주택 건축'이라는 회사의 태도에 의문을 품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약 15년에 걸쳐 일본 최대의 종합재산컨설팅회사에서 재산 컨설턴트로 개인 상속대책과 법인 재무대책, 사업승계 대책, 그리고 부동산 운용 컨설팅 등을 다뤘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지금은 특정 절세상품을 팔지 않는 독립계 컨설팅 회사 설립에 참여하여 고객에게 연간 수백 건의 상속대책과 재산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상품 판매가 목적이 아닌 회사를 만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제가 확신한 것은 앞서 언급한 불평등한 분배방식입니다.

이 책에서는 '가족 모두가 납득하고 후회가 남지 않는 상쾌한 상속' 즉 '상속(爽續)'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예를 들면서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노하우가 원만한 상속에 도움이 된다면 저자로서 이보다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2018년 12월

나루시마 유이치 (成島祐一)

[제1장] 상속분쟁은 왜 일어나는가

상속분쟁은 왜 일어나는가

상속은 살면서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며,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큰일 중 하나입니다. 일단 분쟁이 되면 친지와 가족 간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서로가 이해하기까지 분쟁이 계속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오는 고객 중에도 상속문제가 원인으로 친족간 다툼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법원에 접수되는 유산분할의 조정·심판 건수는 2017년에 1만 6,016건으로, 2008년도 1만 2,979건의 1.24 배이며, 1998년 1만 302건과 비교했을 때 1.55 배로 상속 관련 사건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사법통계(2016년)의 유산분할사건의 금액별 건수를 보면 유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정법원에 청구한 사람들의 재산액은 1,000만 엔 이하가 33.1%이며, 1,000만엔 이상 ~ 5,000만 엔 이하가 42.4%입니다. 사실 유산분할 사건으로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사람들의 75% 이상이 5,000만 엔 이하의 상속재산을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33페이지, 도표5 참조) 많은 재산이 분쟁의 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상속 분쟁이 왜 일어날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법정상속분이라는 평등상속은 결국 분쟁의 결과일 뿐입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이라는 방식으로는 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등상속의 방식을 그대로 강하게 밀어붙이면 상속 분쟁은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속이 순조롭지 않아 가족 간 분쟁이 되고 결국 싸움이 계속돼 가족이 모두 멀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오기도 하지만 이렇게까지 싸우고 나면 회복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속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불평등 상속’입니다. 이를 본서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을 바꾸어 ‘가족 모두가 납득하고 후회가 남지 않는 상쾌한 상속(爽續)’을 목표로 합니다.

상속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몇 가지 있습니다.

너무 강해진 평등의식

먼저 상속 분쟁이 일어나는 큰 원인은 지나치게 강해진 평등의식에 있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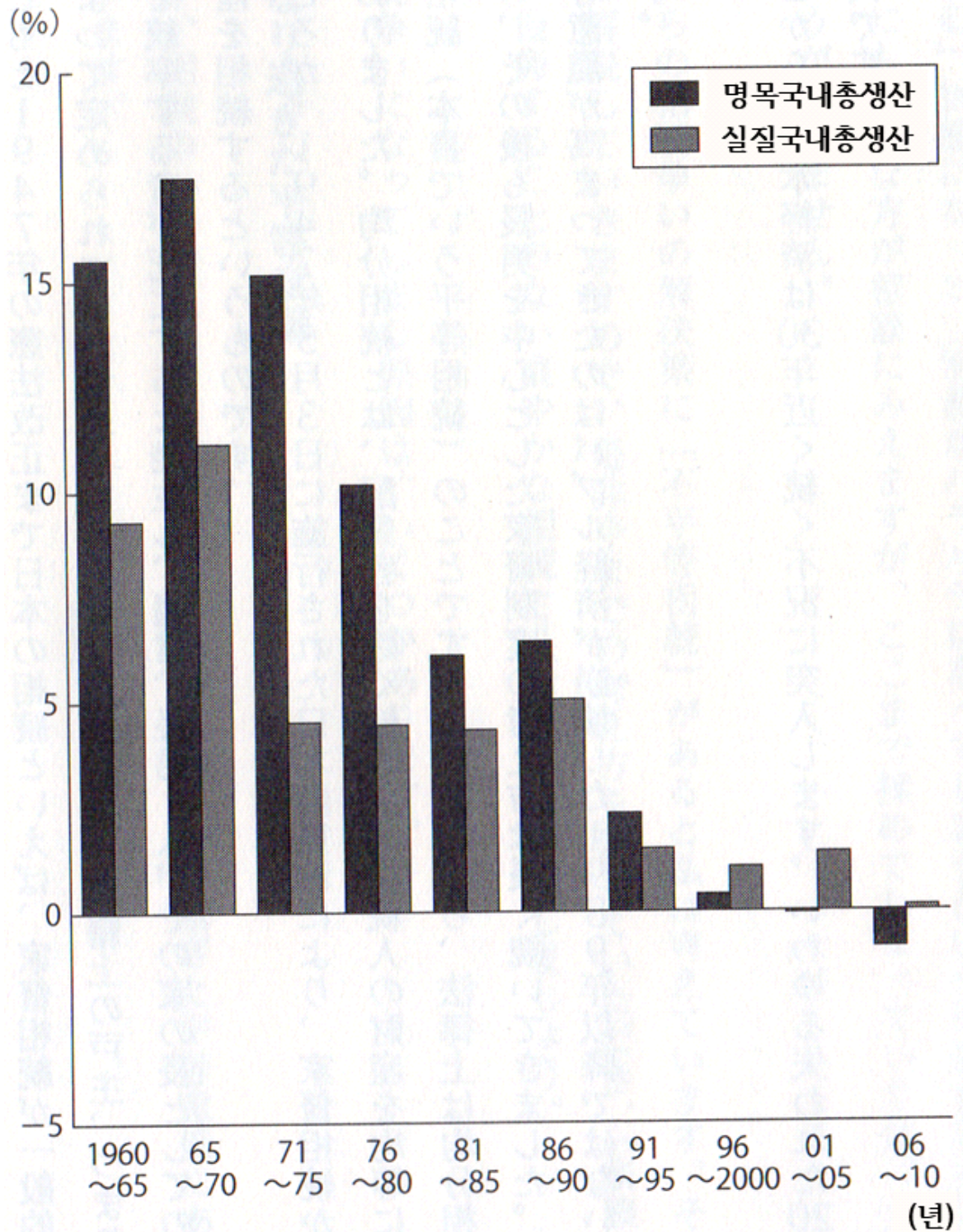
1947년 헌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본에서는 호주상속이 일반적이고 법률이 정한 방법이었습니다. 호주상속이란 호적상의 호주 즉 가장, 가족을 통솔하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발생하며 통상 그 집안의 장남이 가장으로서 모든 지위와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1947년 5월 3일에 개정된 일본 헌법에 따라 호주상속이 균분상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균분상속이란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의 재산을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평등상속을 말합니다. 하지만 법률상 균분상속으로 바뀐 이후에도 장남을 중심으로 하는 호주제도 방식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지금처럼 평등의식이 강해진 것은 버블경제가 붕괴된 1989년 이후입니다.

그때부터 일본경제는 30년 가까이 불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시대입니다.

일본경제의 저성장이 계속되며 소비세 인상, 사회보장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11페이지, 도표1) 기업도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거나 신규 채용이 아닌 계약사원과 파견사원 등 비정규직 고용으로 대체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재산은 받아두자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늘고 균분상속으로 재산을 늘리려는 사람이 증가한 이유입니다.

[도표1] 경제성장을 추이



자료 출처: 내각부 '국민경제계산'을 바탕으로 후생노동성 노동정책담당 참서관실에서 추계
 (주): 수치는 연을 환산한 것

부모의 자산은 내 것!?

최근에는 뉴스나 잡지, 책에서 상속에 관해 많이 다룹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며 일단 권리를 주장하자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상속인이 라면 누구나 법이 정한 상속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상속재산은 부모가 일군 것입니다. 물론 자식에게도 그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지만 자녀에게 얼마를 나누어 줄 지 결정하는 것은 자식이 아닌 부모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상속이 발생하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는 상속에 관한 정보를 부분적으로 듣거나 잡지에 나오는 특집 기사를 읽고 얻은 지식으로 유류분을 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유류분이란 남겨진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원래 유언장이 없는 상속에서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합시다. 유언장이 발견되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의 내연녀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겠다고 기록되어 있다면 자녀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비로소 권리가 발생하며 유류분 반환청구라는 권리를 행사하여 본인의 유류분을 가져오는 절차를 밟습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는 상속인들이 모여 협의를 통해 유산분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합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류분과는 상관없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유류분을 달라고 합니다. 법률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이 오히려 법률을 금과옥조로 여기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이 늘면서 분쟁이 많아집니다.

주요 자산을 물려받는 본가(장남이나 장녀)와의 현저한 인식의 차이

호주상속의 관습이 아직 남아 있는 지역에서는 집안을 이을 특정인(예를 들면 장남)이 대를 잇기 위해 주요 재산을 상속받는다든 생각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집안을 이어 가는 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웃 관계에서 필요한 경조사비를 비롯하여 가족묘가 있다면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필요합니다. 물론 제사와 같은 집안 행사도 치러야 합니다. 한 번에 수십만 엔이 들기도 하지요.

따라서 부동산과 현금과 같은 주요 상속재산을 물려받지 않으면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는 평등하게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는 평등상속의 관념이 생기면서 상속재산 대부분을 집안을 잇는 특정인에게 물려주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한편 대를 잇는 특정인 외의 형제자매들은 상속이 발생하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현저히 나타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잘못된 인식

먼저 원인의 대부분은 상속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인에게 유리한 상속 관련 정보만을 받아들이며 “저도 법정상속분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라고 자주 묻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법정상속분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상속재산은 부모님이 일구어 온 것으로 이를 누구에게 얼마만큼 나눌지는 부모님 자유입니다. 나중에 다시 소개하겠지만 법률 조문에서는 평등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을 나눌 때 한 가지 기준일 뿐이며 반드시 법정상속분으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멋대로 해석하여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려 합니다.

또 한 가지, 상속재산을 현금으로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1990년 이후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집값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14페이지, 도표2 참조)

이 때문에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매년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데다 매년 보유비용 (고정자산세¹⁾ 등의 부담이 있는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받는 것보다 현금으로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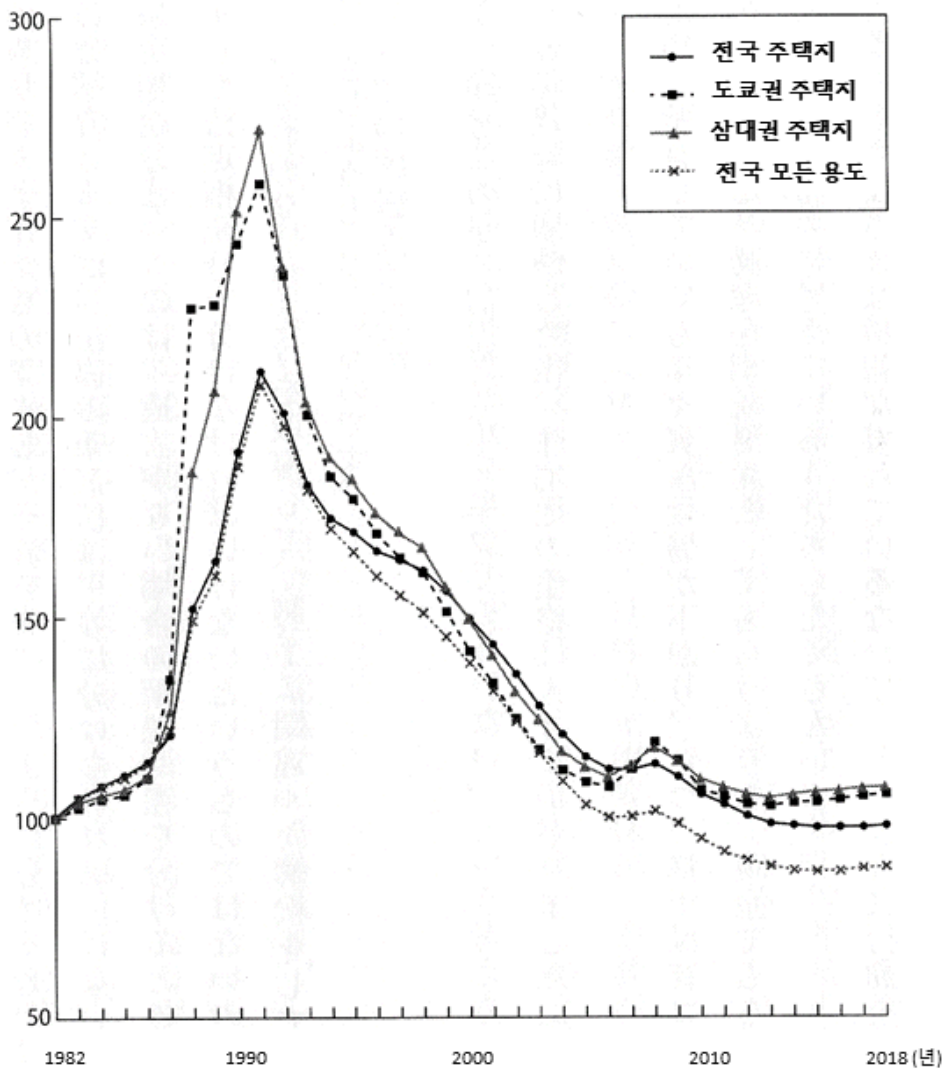
1) 역주. 고정자산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 한국에서 재산세에 해당한다.

는 편이 상대적으로 이익이라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상속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는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득과 실을 따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서 납세 절차에 대해서는 대를 잇는 사람(예를 들어 장남)에게 맡겨버리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귀찮은 일에 대해서는 “집안을 잇는 사람은 당신이니까”라는 말로 모두 떠넘기고 이익만 챙깁니다.

[도표2] 주택 가격 추이



자료 출처: 국토교통성 1982년을 100으로 한다

절세를 전제로 한 잘못된 상속대책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상속세의 실질적인 증세(기본공제 감소 +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상속대책과 상속세에 관한 정보가 뉴스나 잡지, 책으로 더욱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대다수가 상속을 본인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사실상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닌 데도 일종의 절세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피델리티 퇴직·투자교육연구소는 상속 시장을 연간 50조 엔으로 추산했습니다. 최근 늘어난 매력적인 시장을 노리는 주택건설업체, 부동산 업체, 금융기관, 세무사들에게 대규모 사업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사람들의 불안함과 염려를 오히려 이용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유리한 것만 강조하고 불리한 것은 어떻게든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물론 그들 말이 모두 거짓은 아니지만, 영업용 멘트만 들어서는 불리한 점이 충분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상속대책의 일환이라며 쉽게 절세대책부터 세우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절세 그리고 제안 영업의 함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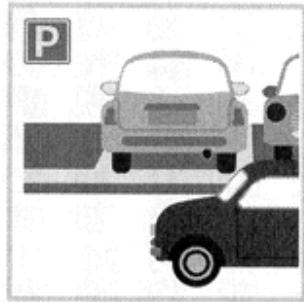
많이 알려진 예로, 상속세 절세대책의 한 방법으로 다세대 주택 건축에 대한 제안을 많이 합니다.

갱지²⁾에 차입금(대출)을 받아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면 토지는 임대주택 건부지로 평가되어 토지 평가액이 낮아집니다. 그 비율은 지상권 비율 × 주택임차권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지상권 비율이 70%이면 주택임차권 비율은 30%이므로 70% × 30%= 약 21% 만큼 평가금액이 감소합니다. 갱지보다 토지 평가가 21% 차감되는 것입니다. 갱지의 토지 평가가 1억 엔이라면 임대주택 건부지의 평가는 7,900만 엔이 됩니다.

2) 역주. 건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도 없으나, 공법상 행정상 규제를 받는 토지. 토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

[도표3]다세대 주택 건축을 통한 상속대책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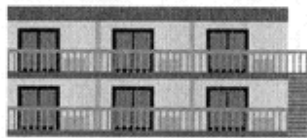


노상 주차장
상속세 평가액 : 1억 엔

토지 평가 1억 엔



[제안 실행 후]



임대주택 건부지 평가
▲21%

토지평가 7,900만 엔 * 지상권 비율 : 70% 지역
건물평가 4,200만 엔 * 건축비의 60%를
고정자산세 평가액으로 가정
전세권 비율 30% 공제

차입금 ▲1억 엔

다세대주택
건축 이후
상속세 평가액 2,100만 엔

▲7,900만 엔의
효과

다음으로 건물의 평가입니다. 건물의 건축비용이 1억 엔 들었다고 합시다. 건물의 상속세 평가액인 고정자산세 평가액을 건축비용의 60%로 가정할 경우 1억 엔으로 건축한 다세대 주택의 상속세 평가는 6,000만 엔입니다.

이 다세대 주택을 임대로 주면 주택 임차권(30%)이 공제되어 자가주택의 70%로 평가됩니다. (6,000만 엔 x 70% = 4,200만 엔) 즉 건축비 1억 엔으로 세운 다세대 주택은 최종적으로 4,200만 엔으로 평가됩니다.

더불어 1억 엔 건축비용을 금융기관에서 받은 차입금으로 충당하여 그 차입금만큼 상속재산에서 채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 잔액과 건물의 상속 평가액과의 차액(채무공제)을 활용하면 부동산 평가가치를 크게 내릴 수 있습니다. (16페이지, 도표3 참조)

즉, 대책을 세우기전 1억 엔으로 평가되던 상속재산이 차입금을 받아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면 2,100만 엔까지 평가가치가 내려가 7,900만 엔의 평가 감소분에 대한 상속세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은 이 절세효과만을 강조하여 임대주택 경영의 리스크나 단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차입금을 상환해가면서 채무공제 효과가 매년 줄어든다는 점이나 앞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공실 리스크 등 임대주택 경영에 관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유가 차입금을 받아서 절세효과를 본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상품을 제공하는 측, 즉 주택건설업체가 그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전달한다는 점입니다. 리스크를 상세하게 설명하면 수주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명한다고 해도 슬쩍 언급하고 넘어가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제안서 말미에 작은 글자로 기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그들의 영업방식입니다.

주택건설업체는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기만 하면 매출이 오르고, 그 주택을 관리하는 부동산회사는 관리 세대수가 늘어나면 매달 관리수입이 늘어납니다. 다세대 주택 건축을 시작하면서부터 발생하는 임대경영의 모든 리스크는 결국 소유주가 짊어지며 경영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개선할 수 있도록 조언은 해주겠지만 이 조언

도 건축주인 소유주의 부담이 증가하는 쪽, 즉 제안하는 측이 돈을 버는 제안이 많습니다.

금융기관의 제안도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로이며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제안 즉 대출을 동반하거나 자사 취급상품 판매로 이어지는 제안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주택건설업체나 부동산회사, 금융기관도 기본적으로 이익을 내기 위한 제안,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생각만 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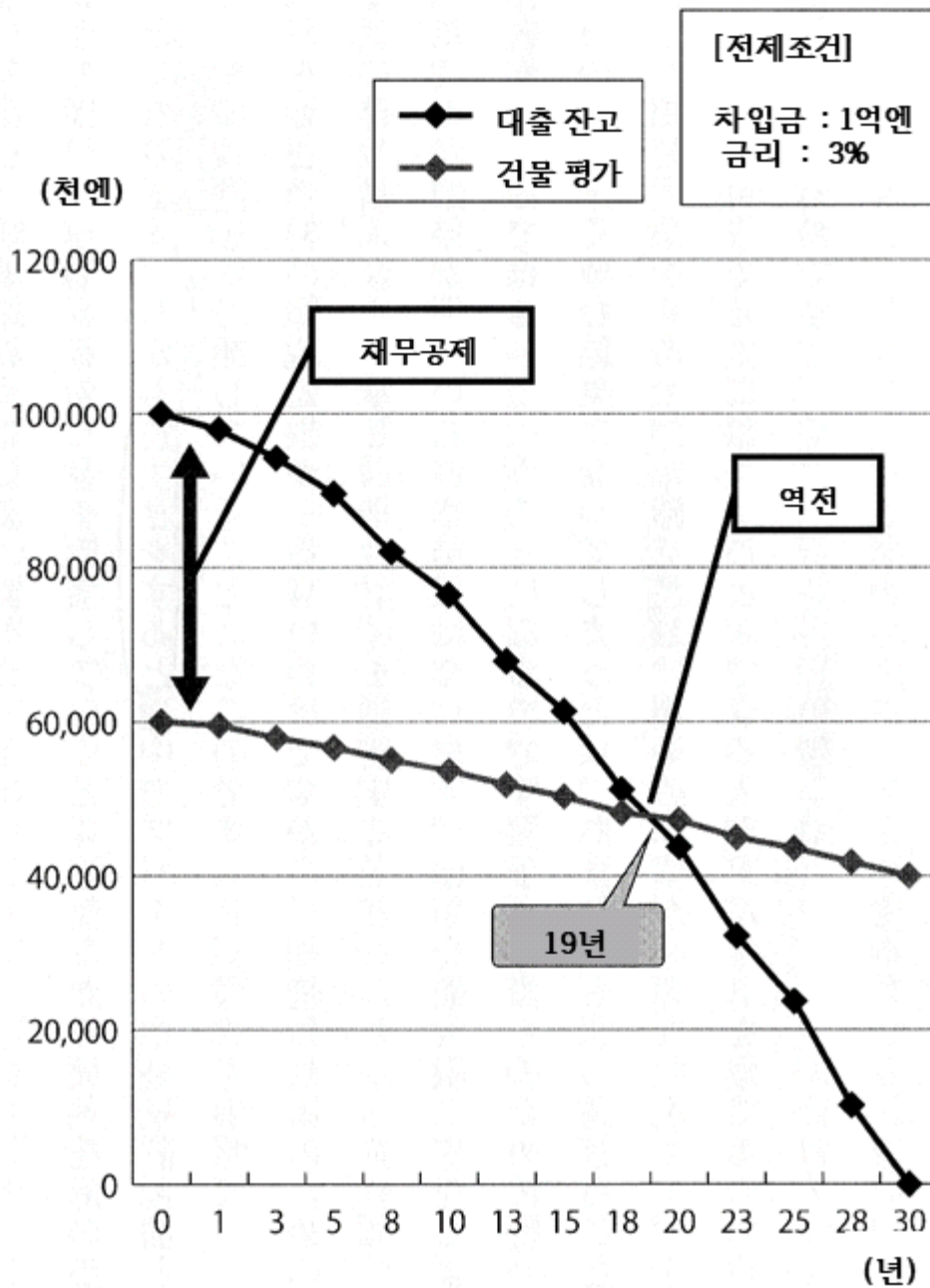
진정성 없는 상속대책에 현혹되지 말라

앞서 채무공제 효과는 매년 감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출을 꺼서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는 방법이 상속대책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속대책을 세우는 사람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으면 슬픈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년 차입금 원금을 상환하면 당연히 채무공제 효과도 줄어들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오래 살 경우 도중에 상속세 평가금액과 차입금 잔액이 역전되어 상속세 평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19페이지, 도표4 참조)

처음 대출을 받은 그 시기에 절세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상속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다세대 주택 건축시 받은 차입금의 상속세 효과를 생각하며 부모님이 빨리 세상을 떠나야 절세효과도 더 크다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최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 빨리 상속이 발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세운 상속세 대책인데, 부모님의 사망을 기다리게 하는 결과라니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닙니까? 상속대책을 세우는 사람의 연령이 높고 상속 준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하는 다세대 주택 건축과 아직 현역에서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건축하는 것은 그 의미의 차이가 큼니다.

[도표4] 차입금 잔액과 건물가격의 관계(상속효과 이미지)



상속 관련 행사장에서 생긴 일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무료 '상속대책 세미나 겸 상담회' 행사에 참가했을 때의 일입니다. 유명강사의 세미나가 열리고 협찬사 상담 부스가 많

이 있으며 상담대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가하는 이벤트였습니다. 저는 듣고 싶은 강연이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제가 접수 데스크에 갔을 때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앞으로 다세대 주택을 건축해서 상속세 대책 겸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분에게 상담하면 될까요?”라고 질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접수 담당자는 “저쪽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는 주택건설업체 상담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상담하시면 됩니다”라고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한 그 사람은 “그렇게 되면 다세대 주택 건축을 전제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저는 일단 먼저 다세대 건축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알고 싶습니다. 일단 검토해보고 건축이 효과가 있다면 어느 업체에 맡길지 제 상황에서 함께 상담해 줄 상담 부스는 없을까요?”라고 되물었습니다. 접수 담당자는 조금 생각한 후에 “그런 곳은 없네요”라고 대답했고, 그 사람은 불만족스러운 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즉 이 행사는 협찬사로부터 협찬비를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무료로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이벤트 주최 측은 장소 제공을 비롯하여 각 협찬사의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돕는 역할을 함으로써 무료행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주는 회사를 바라는 사람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고객들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아키야마 데쓰오 대표가 집필한 『블랙 상속대책』(겐토샤 미디어 컨설팅)에 대해 많은 공감과 문의가 있었던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연계형 세무사가 늘고 있다

이런 행사장에서 상속세 관련해 무료로 상담해주는 세무사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최 측과 협찬사와 제휴하여 일하는 연계형 세무사는 그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장점에 대해 크게 동조하며 세무사로서 세무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주최 측과 협찬사 제안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보증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세금 분야의 전문가이지 상속대책의 전문가나 부동산과 임대주택 경

영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무사가 상속대책의 전문가가 왜 아닌가라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세무사라고 해도 상속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세무사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2015년 세제개편이 되기까지는 연간 상속세 신고자 수는 약 5만 명 정도였습니다. 이에 비해 세무사수는 약 7만 5,000명. 이는 한 사람이 한 건도 채 신고해 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상속세를 전문으로 하는 몇몇 세무사무소가 연간 수백 건에 이르는 신고를 맡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상속세 신고를 해본 적 없는 세무사가 많습니다. 세제개편으로 신고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구도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해보지 않은 세무사를 상속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의사와는 다르게 세무사는 특정 분야를 간판으로 내걸지 않습니다. 대부분 세무사가 법인세 신고와 개인 소득세 신고를 중심으로 업무를 해왔음에도 모든 세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듯 사업합니다. 여러분은 치아가 아플 때 안과에 가지 않겠지요. 하지만 세무 세계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더 심각한 문제는 회사의 고문 세무사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봉쇄형 세무사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고객은 가까이에 있는 고문 세무사에게 상속세 상담을 많이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속 경험이 풍부한 전문 세무사는 매우 적은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고문 세무사는 자신의 비전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에게 물어보라”든지 “잘 아는 세무사를 소개해 주겠다”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고객이 상담한 상속대책에 대해 자신의 무지함이 드러날까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제안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자신이 없으니 당연히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없습니다. 대충 적당한 조언을 해주고 나중에 클레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소송이라도 걸어오면 큰일입니다. 물론 그때가 되면 책임을 질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봉쇄형 세무사는 또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리스크에 대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며 상속 전문가의 제안을 전부 차단해버리고 맙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설령 이 제안이 고객에게 매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의 유효한 제안을 계속 거절하는 쪽으로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상속 상담을 하면 상담자의 재산과 상속인의 사정 등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고 일부만을 잘라낸 어중간한 상속대책이 횡행하게 됩니다. 실제 저에게 상담을 오는 분은 이미 어딘가에서 상담을 했지만 그 대책이 애매하여 고민이 깊어진 사람들뿐입니다.

부채만 남은 자산의 증가, 분쟁의 불씨로

자사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업체와 부동산 업체, 금융기관 그리고 그들과 연계된 세무사들의 솔깃한 영업용 멘트에 현혹되어 자녀에게 남길 소중한 자산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매력 없는 자산만 남기 때문에 상속인들끼리 분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중에 주차장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주차장은 갱지로 평가되므로 그대로 소유하면 상속세 평가액은 100%입니다. 게다가 갱지이기 때문에 고정자산세도 다세대 주택을 건축한 건부지보다도 높습니다. 주차장 수입의 대부분은 고정자산세를 납세하는 데 써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서 주택건설업체와 금융기관이 제안하는 방식이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여 임대사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분명 고정자산세와 상속세 등 세금 부담은 줄어듭니다. 우선 다세대 주택을 건축함으로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액이 6분의 1이 되어 고정자산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또 상속세 평가액에서 토지는 임대주택 건부지로 보기 때문에 상속세 평가액은 약 20% 줄어듭니다. 그리고 차입금으로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게 되면 고액의 채무가 발생합니다. 다세대 주택의 상속세 평가액과 건축 시 대출받은 채무 잔액의 차액이 채무공제의 효과로 나타나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16페이지, 도표3참조)

또 건물의 공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업체의 제휴 부동산 업체가 일괄적으로 임대하는 전대리스(Sublease)³⁾를 이용하면 된다고 제안합니다. 입주자들의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시킨 호화로운 설비는 수주금액을 올리기 위한 작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공실이 나오면 “요즘 입주자들이 원하는 구조와 설비, 그리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는다”라며 불필요한 리모델링을 유도하여 비용이 더 들기도 합니다.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때는 고급설비를 들여와서 건축비가 뛰어오르며 또 임대 사업운동을 할 때도 전대리스의 이용으로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하게 설정되어 수입이 줄어듭니다.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기는 했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주택건설업체와 부동산 업체는 건축한 다세대 주택에서 수익이 너무 많이 나오면 그만큼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가 높아지니 이익이 나지 않는 편이 좋으며 잘못된 이론을 소유주에게 설명하며 납득시킵니다.

절세는 됐지만 납세는 하지 못해

절세대책을 최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막상 상속이 발생하면 납세자금이 부족한 분들도 종종 보입니다.

상속세 납세용으로 빈 땅을 그대로 두거나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소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동산 업체나 주택건설업체의 영업사원들이 찾아와서 빈 땅으로 그냥 두면 고정자산세가 높을 것이다, 갱지를 그대로 두면 상속세 평가가 높아지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다세대 주택을 짓자고 권합니다.

대출 받은 돈으로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면 상속세가 줄어든다고 하나 완전히 제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막상 상속세를 납부하려고 하니 납세용 토지에 건물을 건축해버렸기 때문에 팔 수 있는 땅은 없습니다. 세금을 납부할 자금 및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할 현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가까스로 건축한 다세대 주택을 전부 매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건축이었을까요? 모처럼 받은 재산이 상속에 의해 사라지는 겁니다. 만약 일부라도 갱지로 남겨두었다면 상속 발생시 납세자금으로 현금화할 수 있었을 텐데 절세만을 고려한 나머지 가지고 있던 재산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3) 역주. 리스 이용자가 제공받고 있는 리스 자산을 다른 이용자에게 다시 리스하는 계약.

건축한 수익성 물건을 팔아버리는 지경까지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전부터 땅주인으로 총액 3억 엔 상당의 토지를 소유한 자산가 스즈키 히로시 씨(가명/67세)는 고정자산세를 고려하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은 그다지 이익이 되지 않았고 고정자산세를 가까스로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형 주택건설업체의 영업담당자가 스즈키 씨를 찾아왔습니다. “땅을 주차장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상속이 발생할 때 높은 상속세가 과세되니 유효하게 활용하여 절세대책을 세워 보지 않겠느냐”라는 용건이었습니다.

그 영업담당자의 제안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주차장에 다세대 주택을 세우면 앞서 말한 대로 토지는 임대주택 건부지로 평가되어 금액이 크게 내려갈 뿐 아니라 대출금과 건물의 평가 차액을 활용하여 채무공제 효과를 볼 수 있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억 엔 상당의 땅을 갹지로 소유하고 있으면 상속세 평가액도 3억 엔입니다. 이 상태에서 금융기관에서 2억 엔의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그 현금을 그대로 수중에 갖고 있는 상태라면 3억 엔으로 평가된 땅과 현금 2억 엔에서 부채인 2억 엔을 빼도 과세액은 3억 엔이며 대출을 받아도 과세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상속세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는 것은 상속대책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출받은 돈을 가치가 동일하면서 상속세 평가액이 낮은 자산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상속세 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현금으로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면 상속세 평가액이 내려갑니다. 대출을 받아 다세대 주택이 건축되면 상속세평가액은 주택 임차권 비율을 고려하여 건축비의 대략 50% 이하로 상속세가 내려갑니다. 물론 땅은 임대 건부지로 상속세 평가액이 약 20% 낮아집니다. 또 건물 용도가 거주용이면 땅의 고정자산세도 내려갑니다. 게다가 임대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수입으로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스키 씨는 주차장에 대출금으로 다세대 주택을 짓게 되면 상속세가 줄어든다는 영업 담당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대형 금융기관의 지사장이 함께 온 것도 스키 씨를 결심하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다세대 주택 운영에 대한 불안은 있었지만 대형 주택건설업체와 금융기관의 지원도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 판단하여 스키 씨는 최종적으로 모든 주차장에 다세대 주택을 건축했습니다.

몇 년 후 상속이 발생하자 분명 다세대 주택 건축 이전과 비교하면 상속세는 크게 줄었습니다. 그 점에서는 금융기관과 주택건설업체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완전히 제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수천만 엔의 세금이 과세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양측 모두 상속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어떤 조언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예금이 많지 않았던 데다 건축한 다세대 주택은 좋게 평가해도 수익이 결코 높다고 할 수 없었고 그 수익도 대출금 상환과 경비로 나가고 남은 부분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여 예금은 늘지 않았습니다. 계획했을 당시에 건설업체 영업 담당자와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임대주택 운영은 수익이 잘 나느냐?”라고 물었을 때 두 사람은 “수익이 나지 않아도 괜찮다. 상속대책이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면 현금이 상속재산으로 추가되어 상속세가 늘어난다. 본전 정도가 딱 좋은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설득된 데다 주변 자산가들도 많이들 다세대 주택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안일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속세를 납세할 때가 되자 이전보다 세금이 크게 줄어들기는 했으나 수천만 엔의 상속세가 과세 되는데 이를 납부할 현금이 없습니다. 땅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려 해도 갱지였던 주차장에는 이미 주택이 건축되었으니 납세에 사용할 수 있는 땅은 없습니다. 고민하던 끝에 건축한 주택을 땅과 함께 매각하여 건축비 대출 잔액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다세대 주택을 매각하여 세금을 납부한 셈입니다.

결국 자신의 집만 남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주택을 건축했던 것일까요?

당시 먼저 상속세를 계산해 보고 납세를 하기 위한 토지를 남겨두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며 후회했습니다. 주택건설업체 영업담당자와 금융기관에서 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납세용 토지를 남겨두고 남은 땅에 수익성 좋은 다세대 주택을 건축했더라면 그 수익으로 생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절세를 전제로 시작을 하면 절세하는 데에만 집중하여 상속세 납부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며 그 결과 상속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너무 강한 평등의식, 잘못된 상속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잘못된 상속대책으로 상속인에게 도움이 되는 재산이 줄어든 상태로 상속이 진행되어 적은 수의 재산을 서로 가져가려고 상속 분쟁이 일어난다는 점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제2장] 평등상속의 방법으로는 다툴 수밖에 없다

평등상속을 목표로 하면 문제가 생긴다

제1장에서는 상속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크게 나누어 다음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지나친 평등의식입니다. 둘째 재산을 물려받아 그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상속인의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 잘못된 인식으로 세운 상속대책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매력적인 재산이 줄어든다는 점.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상속이 일어나기 때문에 적은 재산을 두고 쟁탈이 일어난다는 점을 이해하셨지요.

제2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등상속' 방식으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등상속을 고집하면 할수록 점점 상속 문제가 복잡해져 가족들이 다투는 쟁족(争族) 그리고 계속 다투는 쟁속(争續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주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핵심1 금액만 따로 고려한다

평등상속을 목표로 했을 때 처음 맞닥뜨리는 문제가 상속재산의 금액만 따로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법정상속분은 구체적인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상속인이 자신이 취득할 상속재산의 금액을 쉽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종류나 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금액만 생각할 때가 많다고 느낍니다. 자신이 받을 금액에만 관심이 있고 상속세 납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 현금이나 예금, 유가증권과 같은 현금화가 쉬운 자산만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유동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고 부동산과 같은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이 많습니다.

4) 역주. 상속(相續)과 쟁족(争族)과 (쟁속)争續은 일본어에서 [소조쿠]라고 발음되는 동음이의어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법정상속분 금액을 멋대로 계산하여 그 금액을 현금 유동성이 높은 재산으로 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상속인 가운데는 집안을 이어갈 장남이나 장녀에게 상속세 납부를 맡기고 자신은 세후 금액을 당연한 듯이 요구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현금화가 어려운 부동산을 주로 소유한 일본의 자산가들은 상속인에게 나눌 재산을 현금화하거나 상속세의 납부자금을 확보하는 데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라는 또 하나의 상속인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강제로 게다가 가장 먼저 상속세라는 명목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속재산의 종류와 성질 그리고 국가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상속인(상속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2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평등상속인 법정상속분의 권리만 주장할 뿐 그 상속재산을 쌓아 올린 부모님에 대한 돌봄의 의무는 다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호주상속의 방식에서는 상속재산을 받기 위해 당연히 부모님을 모시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성립했겠지만 평등상속에서는 권리만을 논하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세 시대를 사는 일본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장수국입니다. 후생노동성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평균수명은 81.09세, 여성의 평균수명은 87.26세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를 보고 아직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평균수명뿐만이 아니라 건강수명 연령이 상속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수명이란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수명의 지표로 돌봄을 받거나 병상에서 지내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건강수명은 남성이 72.14세, 여성이 74.79세 (2016년, 후생노동성)입니다. 즉 건강수명에서 평균수명에 이르기까지 9년에서 10년 동안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원래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자녀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지 않는 형제자매는 집안을 이어갈 사람의 몫이라고 단정

해 버립니다. 집세도 안 내고 함께 살고 있으니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며 양심의 그 어떤 거리낌도 없이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법정상속분을 청구할 권리가 정말 있을까요? 저는 항상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법률에서 법정상속분을 정해 놓았다며 권리만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유산 분할 협의에서 다툼의 불씨가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그대로 두면 상속 분쟁은 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핵심3 숨겨진 부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부모님을 돌보거나 집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상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를 저는 숨겨진 부채(부담)라 말합니다.

숨겨진 부채에는 의외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묘를 관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각종 제사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지출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연간 100만 엔에 이르기기도 합니다.

또 부모님이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면 이에 대한 비용도 듭니다. 2018년 생명보험 문화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매일 돌보는데 필요한 비용은 평균 7만8천 엔 정도 라 하니 연간 90만 엔 이상의 비용이 드는 셈입니다. 만약 상시 옆에서 간호해야 하는 경우 돌봄 비용에다 돌보는 자녀의 생활비까지 포함해 앞서 말한 비용의 3~4 배의 비용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친척이 많은 경우 친척 관계에도 비용이 듭니다. 경조사 비용으로는 얼마를 지출 해야 할까요? 이때에도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용의 총액은 적어도 연간 300만 엔에서 400만 엔 정도입니다. 숨겨진 부채가 10년 동안 3,000만 엔 20년간 6,000만 엔이 넘는 금액에 이릅니다.

그리고 대대로 이어온 도시 농가, 부모에게 사업을 물려받은 사업계승자에게는 농가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자산에 고액의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많은 도시 농가와 사업계승자는 상속세의 납세유예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납세유예는 도중에 농가와 사업을 그만둘 때 소급해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고액의 추가납세를 피하기 위해서 평생 농가와 사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농가와 사업을 물려받지 않은 다른 상속인은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압박을 알지 못한 채 “후계자이니까 그 정도의 어려움은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상속인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상속인들 사이의 골은 점점 깊어져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채를 방치했기 때문에 상속인 사이의 분쟁은 한층 심각해집니다.

민법(상속관련) 개정으로 보는 평등의식의 폐해

2018년 7월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통과된 유산상속에 관한 개정된 민법에서는 배우자가 남은 인생에서 힘들게 살지 않도록 배려한 우대정책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배우자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인 ‘배우자 거주권’을 보장했습니다.

여러분은 법이 왜 이렇게 개정되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법률 개정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률이 통과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부부가 한 집에 살고 있고 자녀 둘은 이미 독립해서 따로 사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남편이 사망하고 상속이 발생했다고 해봅시다.

남편의 주요 재산은 상속평가 2,500만 엔의 자택과 500만 엔의 현금이었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아내가 자택을 상속받고 현금도 노후 생활을 위해 아내가 상속받는 것이 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남편이 사망하면서 발생하는 첫 상속, 1차 상속에서는 두 명의 자녀에게는 상속분이 제로라는 불평등한 분할이 공평한 재산 분배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택도 현금도 부모님이 일구어 온 것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상속재산이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를 납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납득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정상속분으로 나누면 두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750만 엔입니다.

현금은 500만 엔밖에 없고 앞으로의 생활을 생각하면 어머니에게 현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생활은 안중에 없이 “우리 법정상속분인 750만 엔을 달라”고 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 돈 없다”라고 어머니가 반론하면, “그럼 집을 팔면 되지 않느냐”라고 나오는 겁니다. 유산분할 협의에서는 이렇게 자녀가 강하게 나오면 최악의 경우 자택을 매각해서 돈을 자녀에게 나누어 줄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민법이 개정된 배경에는 자택을 매각해서 자녀가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현금을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매우 한탄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법정상속, 평등상속을 주장한 나머지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곳을 매각해 버리는 언어도단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자신을 지금까지 길러 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평등상속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눈앞의 이익에 눈이 먼 사람들이 평등상속을 지지합니다.

이는 평등상속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평등상속으로 ‘혼외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번 민법이 개정된 또 하나의 배경에는 친자가 아닌 혼외 자녀의 상속 문제가 있습니다. 혼외자 법정상속분은 원래 친자의 1/2이었습니다. 즉 친자의 법정상속분이 2분의 1일 때 친자가 아닌 자녀의 상속분은 4분의 1이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9월 4일에 대법원에서 이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친자와 혼외자의 상속비율이 같아졌습니다.

앞서 말한 예에서 만약 남편에게 혼외자가 있을 때 상속재산은 아내와 세 명의 자녀가 나누어 갖게 됩니다. 두 명의 친자녀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본인들의 상속분을 받지 못하는 데에 합의했더라도 혼외 자녀는 어머니와 혈연관계가 없으므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쉽습니다. 혼외 자녀를 포함한 자녀 세 명의 법정상속분은 각

각 500만 엔이므로 현금 500만 엔은 혼외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만약 수중에 현금이 부족한 경우 집을 팔아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상속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를 반영해서 민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유산 총액이 적은 사람이 상속 분쟁을 하는 진짜 이유는?

머리말에서 언급했듯이 대법원이 실시하는 사법통계(2016년) 유산분할사건의 금액별 건수를 보면 1,000만 엔 이하가 33.1%, 5,000만 엔 이하가 42.4%입니다. 즉 유산분할사건으로 법원에서 다투는 사람들의 75.5%는 5,000만 엔 이하의 상속재산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적은 재산인데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그 주된 이유는 재산 내역에 있습니다. 재산의 많은 부분이 실제 나누기 어려운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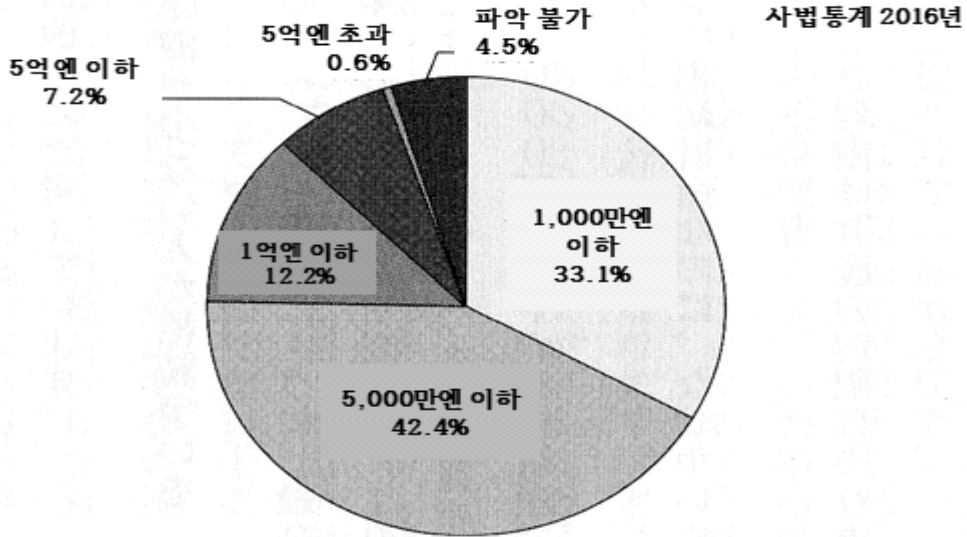
그 대표적인 것이 주택과 같은 부동산입니다. 상속재산이 5,000만 엔 이하일 경우 도시권에 집과 수백만 엔의 예금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부동산은 현금과는 달리 현금화하지 않으면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넓은 땅이라면 그 땅을 나누면 되지만 건축된 주택을 나누기란 어렵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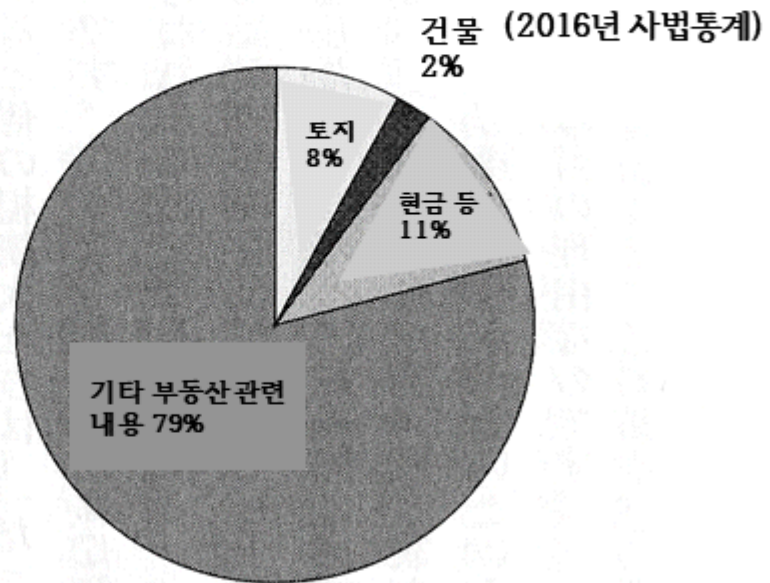
사법통계를 다시 봅시다. 유산분할 사건의 내용별 건수를 보면 유산이 현금일 때 법정 싸움이 되는 것은 불과 11%, 나머지 90% 가까이는 나누기 어려운 부동산 관련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산분할에서 재판까지 가는 데에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과정이 있었겠지요.

[도표5] 유산분할사건 금액별 건수



[도표6] 유산분할 사건 내용별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자택과 약간의 예금이 있고 집에서 장남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상속이 발생하자 다른 상속인들도 집으로 모였습니다. 여기서 유산분할 협의가 시작되었지만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아마도 “집은 같이 살고 있던 형님이 상속받아도 좋다. 하지만 이 집의 평가액이 4,000만 엔 정도이고 우리에게는 법정상속분이 있으니 그만큼을 현금으로 달라.”

이에 대해 장남은 “유산에 현금이 없으니 줄 수가 없다”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상속인들은 “그러면 집을 팔아서 현금화해서 달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대화는 점점 어긋날 뿐입니다. 이렇게 유산분할 조정이 법원까지 가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적은 상속재산인데 나누기 어려운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평등한 분할방식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다투고 맙니다.

상속재산이 많은 자산가나 부유층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나누어 받을 것이 있어서 일단 다툼 요소가 적습니다. 이것이 상속재산이 적은 쪽이 유산분할에서 다투는 실제 이유입니다.

게다가 나누기 어려운 상속재산은 부동산 만이 아닙니다.

나누기 어려운 재산 중 하나가 사업입니다. 사업은 주로 그 회사의 주식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자사주식 평가가 아무리 높아도 상장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해서 현금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상속인이 평등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자사주를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형제 사이가 좋지 않으면 회사 경영 자체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자택 겸 공장도 매우 나누기 어려운 재산입니다. 나누어버리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도 상속인들이 평등하게 나누자고 하면 할수록 사업을 접는 선택지 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이래서는 집안을 지킬 수 없겠지요.

집안을 지키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180도 생각을 전환하여 평등이라는 분배방식에 얽매이지 않아야 다툼 없이 해결됩니다.

후계자에게 상속재산을 하나로 모아주는 편이 좋은 네 가지 전형적인 예

평등 상속에 얽매이지 않고 후계자 한 사람을 선택하여 상속재산을 하나로 모아 주는 것은 다음의 네 가지 경우에 필요합니다.

- ① 주택이 유일한 재산 (장남은 같이 살고, 다른 형제들은 따로 살 경우)
- ② 도시 농가 (땅은 있지만 현금이 적은 경우)
- ③ 넓은 땅이 필요한 사업자 (테니스 클럽, 골프 연습장, 자동차 교습소 등)
- ④ 자영업자나 창업 사장 (자사주가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주택이 유일한 재산 (장남은 같이 살고 다른 형제들은 따로 살 경우)

상속재산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약간의 예금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속 분쟁이 생기기 쉬운 전형적인 예입니다. 왜 다투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속인에게 나누어 줄 재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4년 사법 통계에 따르면 유산분할 사건에서 다투는 경우는 상속인이 세 명인 경우가 전체의 27.5%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이 상속인이 두 명인 경우로 22.2%, 그 다음이 상속인이 네 명인 경우로 19.1%입니다. 즉 상속 분쟁은 상속인이 네 명 이하인 경우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장남이나 장녀가 살고 있던 집을 자연스럽게 물려받으면 다른 형제 자매들 입장에서는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금은 적고 나눌 수 있는 재산은 집밖에 없어서 유산분할 협의에서 대립이 생기고 최종적으로는 재판에 이르는 구도입니다.

상속인들에게 나누어 줄 재산이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평등하게 상속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인 집을 자신의 재산이라 생각

하고 다투는 사람이 많습니다.

② 도시농가 (땅이 있지만 현금이 적다)

국세청 조사에 의한 2016년 상속재산의 구성비율을 보면 부동산(가옥과 토지)이 차지하는 비율은 43.5%로 거의 절반에 이릅니다.

이런 부동산 문제는 도시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도시 농가를 소유한 사람들의 재산구성을 보면 80%에서 90%가 부동산입니다.

도시에 있는 농지는 농업을 계속하도록 권장하는 차원에서 생산녹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을 지속하는 동안은 토지가 저평가되어 결과적으로는 상속세도 낮게 책정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농업을 그만두면 농지였던 그 토지는 택지로 평가되므로 택지와 동일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당연히 토지 평가가 올라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농지를 매각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이후 농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후계자인 상속인에게 땅을 더 많이 주지 않는 한 지속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토지 평가를 보면 농가를 이어가는 상속인에게 좀 더 많이 물려주는 것은 다른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게 느껴져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또 상속세 납세유예 문제도 있습니다. 도시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조상 대대로 상속되어온 그 토지에서 농업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도시 생산녹지는 농업을 계속하는 한 고정자산세도 상속세 평가액도 저평가됩니다. 하지만 상속을 계기로 농업을 그만두면 택지로 평가되기 때문에 고액의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이 때문에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은 계속 생산녹지로 둔 채 상속세 납세유예제도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상속세 납세유예제도는 종신 영농이 조건이며 상속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농업을 해야 합니다. 중간에 고령이나 병을 이유로 농업을 그만두면 그 시점에 유예 조치가 사라져 상속받은 시점부터 소급해서 상속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그동안의 이자까지 부가됩니다. 평생 농업을 계속하다가 사망했을 때 면제받는 구조입니다.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의 상속세 납세유예액이 1억 엔이

라면 1억 엔에 상당하는 세금을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농지가 나뉘게 되면 택지로 평가되어 고액의 상속세가 과세되며 납세유예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상속인에게 또 다른 재산을 준다면 문제없겠지만 자금의 여유가 없는 농가가 많아 이 또한 어렵습니다.

<칼럼> 생산녹지를 임대해도 납세유예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8년 9월에 ‘도시 농가 임대 원활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계획 인증을 받은 사람이 생산녹지를 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상 장점으로는

- ㄱ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소유자(임대인)에게 생산녹지가 반환된다.
- ㄴ 이미 상속세 납세유예제도 적용을 받고 있는 생산녹지의 임대가 가능하다
- ㄷ 임대 기간 중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생산녹지의 상속인(임대인)은 임대 상태에서 상속세 납세유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 ㄹ 이 법률에서 제3자에게 생산녹지를 대여한 자(임대인=소유자)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주 종사자증명이 발행되어 매입신청이 가능하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납세유예를 적용받은 농업상속인에게는 종신 영농 의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상속인이 병에 걸려 농사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가족이 생산녹지를 물려받아 농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납세유예가 끝나고 그동안의 상속세에 이자세까지 납부해야 했습니다.

또 농지를 제3자에게 빌려주면 경작권이 발생하여 저지⁵⁾를 소유한 사람은 납세

유예제도의 적용도 생산녹지의 매입신청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농업상속인은 이와 같은 상황을 각오하고 생산녹지를 물려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녹지에는 '2022년 문제'가 있습니다.

1992년에 지정된 생산녹지가 2022년에 30년을 맞이하면 자유롭게 매입신청(생산녹지 해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 생산녹지로 돌지 아니면 매입신청을 해서 유효한 활용을 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생산녹지로 돌 경우 10년 후에 다시 선택의 기회가 옵니다. (특례생산녹지 제도)

예측하기로는 꽤 많은 면적의 생산녹지가 매입 신청될 것이며 주택지의 대량 공급으로 땅값 하락이나 대량의 임대주택 건축에 의한 공실 증가의 문제가 우려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된 '도시 농가 임대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예전보다 생산녹지를 쉽게 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문제가 해결되어 생산녹지의 매입신청은 그다지 많지 않을 거라는 예측도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생산녹지의 상속세에 대한 납세유예제도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③ 넓은 땅이 필요한 사업자 (테니스 클럽, 골프연습장, 자동차 교습소 등)

테니스 클럽, 골프 연습장, 자동차 교습소 등 사업에 넓은 토지가 필요한 사업의 상속에 있어서도 상속인들이 서로 대립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중에는 원래 농업을 하시던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60여 년 전 천황 내외가 테니스를 계기로 혼인을 하게 되었다는 말에

5) 역주. 나지(裸地)의 일종으로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 토지의 자유로운 사용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이 없다는 점에서는 갱지와 동일하나, 해당 토지에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사법상에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갱지와 구별된다.

한때 테니스가 유행했습니다. 때마침 도심부에 인구는 증가하는데 택지가 크게 부족해서 많은 농지가 택지로 바뀌던 시기였습니다. 택지화가 진행되는 것을 꺼리던 농부들이 농업을 그만두고 테니스 클럽이나 골프 연습장, 자동차 교습소 같은 업종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게다가 테니스 코트나 골프 연습장 등은 갱지로 평가되기 때문에 세금 경감조치가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까스로 사업을 유지하다가 상속이 발생했을 때 다른 상속인으로 인해 토지가 나뉘거나 토지의 일부를 팔아버리면 사업 자체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동차 교습소는 시설을 세우는 데 최소 8000m²의 땅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18세 인구가 줄어들어 운전면허를 따려는 사람이 적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교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후계자에게 자산(토지)을 몰아 주는 불평등 상속이 중요합니다.

④ 자영업자나 창업 사장(자사주가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자영업자나 창업 사장의 경우 사업을 승계자에게 물려줄 때 자사주 상속이 문제가 됩니다. 자사주는 '유사업종 비준 방식'이나 '순자산가액 방식' 등으로 평가됩니다. 매년 흑자로 실적이 계속 오르고 있다면 자사주 평가액이 수억 엔 규모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자사주는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매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속분을 현금으로 분배한다고 하면 토지나 기계 그리고 회사를 통째로 매각해야 하며 회사는 실질적으로 폐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비상장회사의 자사주 평가는 생각 외로 높게 평가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에게 나누어 줄 현금이 없다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나누어주면 회사를 순조롭게 경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승계자 한 사람에게 주식을 몰아주는데 이것이 다른 상속인의 반대에 부딪히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자사주 상속 문제가 발생하면서 납세유예제도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기한을 둔 일몰법⁶⁾으로 이전 법률

에서는 자사주 대상 주식수에 제한이 있거나 대상 주식과 관련된 전액이 유예되지 않는 등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제도의 활용이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납세유예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고 자사주 승계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을 잘 분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승계자에게 자사주라는 재산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상속인에게 나누어 줄 재산(주로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즉 융통성 없이 법정상속분에 얽매이지 않고 현 상황에서 상속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행복한 상속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6) 역주. 미리 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규정한 법

[제3장] 불평등 상속의 추천

상속은 불평등하게 해라

제2장에서는 ‘평등상속’의 방식에 따라 상속을 진행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소개했습니다. 평등상속에 얽매일수록 상속문제가 복잡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문제가 다툼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를 제3장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상속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평등하게 나누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재산을 평등하게 나누지 않으면 법률상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법 900조에서 상속분을 법률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900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때 그 상속분은 다음의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일. 자녀 또는 배우자가 상속인일 때 자녀의 상속분 및 배우자의 상속분은 각각 2분의 1로 한다.
- 이.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상속인일 때 배우자의 상속분은 3분의 2로 하며 직계존속의 상속분은 3분의 1로 한다.
- 삼.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상속인일 때 배우자의 상속분은 4분의 3으로 하며 형제자매의 상속분은 4분의 1로 한다.
- 사. 자녀,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여러 명일 때 각자의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한다. 단 부모의 한쪽만을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상속분은 부모 양쪽을 같이하는 형제자매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한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는 유산 분할 협의에서 이루어집니다.

유산분할 협의에서 상속인은 “법률에서 정한 상속분을 받을 수 있다”라며 법정 상속분을 언급합니다.

즉 많은 사람이 법정상속분을 재산분할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속분이 민법에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민법에 법정상속분으로 나누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 대부분은 민법에 그렇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정상속분이 정해져 있으니 이를 참고로 나누어야 맞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사실 상속재산 분할에 관해 민법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민법에서는 어떻게 적혀 있을까요?

민법 906조 (유산분할의 기준)

유산의 분할은 유산에 속하는 물건 또는 권리의 종류 및 성질, 각 상속인의 나이, 직업, 심신 상태 및 생활 상황, 그 외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

이를 쉽게 풀어 쓴다면, 유산의 종류가 택지인지, 농지인지, 임대 중인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예금인지, 유가증권인지, 그리고 상속인은 몇 살인지, 직업은 무엇인지, 심신은 건강한지, 생활 상황은 어떠한지, 성별과 결혼 여부, 피상속인과 의 평소 관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고 적절하게 유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은 반드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평등하게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인의 연령도 다양하고 경제상황도 각각 다르며 심신 상태도

다릅니다. 상속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상속을 평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법정상속분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실제 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법률적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어떤 재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길지만 인용해보겠습니다.

일본의 상속제도를 정하는 민법의 규정을 개관하여 알 수 있듯이 민법은 사회정세의 변화 등에 따라 개정되며,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 승계에 대해 다각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민법 900조의 법정상속분 규정은 그 일례에 지나지 않으며,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다. 즉, 법정상속분 규정은 유언에 의한 상속분 지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기능하는 규정이다. (2019년 7월 5일 대법원 대법정 ‘혼외자 상속차별 재판’)

즉 법정상속분 규정이란 유언에 의한 상속분 지정이 되어있지 않을 때 보완적으로 기능하는 규정입니다. 법정상속분으로 나눈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주장을 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도록 이 규정을 금과옥조처럼 절대적 기준으로 여기지만 이는 부모님이 일구어온 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을 고집한 결과 재산을 19명이 공유하게 되다

여기서 법정상속을 너무 고집한 나머지 상속에 실패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요시다 유키(가명/72세) 씨에게는 가스에(장녀), 미와(차녀), 도시야(장남), 고지(차남)의 네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요시다 씨는 예전부터 평등의식이 강하여 상속할 때도 네 명의 자녀에게 평등하게 상속하고 싶다, 자녀에게 차별은 없다고 말해 왔습니다.

요시다 씨는 도쿄 도내에 자택이 있었으며 토지 평가액은 1억 엔이었습니다. 본인이 사망한 후에 자녀들이 다투지 않도록 유언장도 작성했습니다. 1억 엔 상당의 집을 모두가 공유하도록 유언을 남겼습니다.

가정법원에서 검인해야 하는 자필 유언서가 아닌 공증 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유언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재산을 법정상속분으로 분할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등하게 상속하는 방식은 네 명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아버지에게 상속이 발생했을 때 유언에 따라 집을 네 명이 공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행히 형제간 사이가 좋아서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도 다툼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 그 집에 계획도로가 지나가게 되어 시청 직원이 방문했습니다. 그해 계약을 해서 다음 해 3월까지 넘겨받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네 자녀의 공동재산이었기 때문에 네 명 모두의 동의가 없으면 집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시청 직원이 알아보니 당시의 네 자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중 일부 상속 포기를 한 상속인이 있었으며 손주가 재산을 상속하는 대습상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속이 반복된 결과 현재 소유자는 무려 19명이었습니다. 친척이라고는 하나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고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어서 모두의 동의를 받아내는데 고생을 했습니다.

평등상속, 법정상속분을 너무 고집한 결과 사태는 더 힘들어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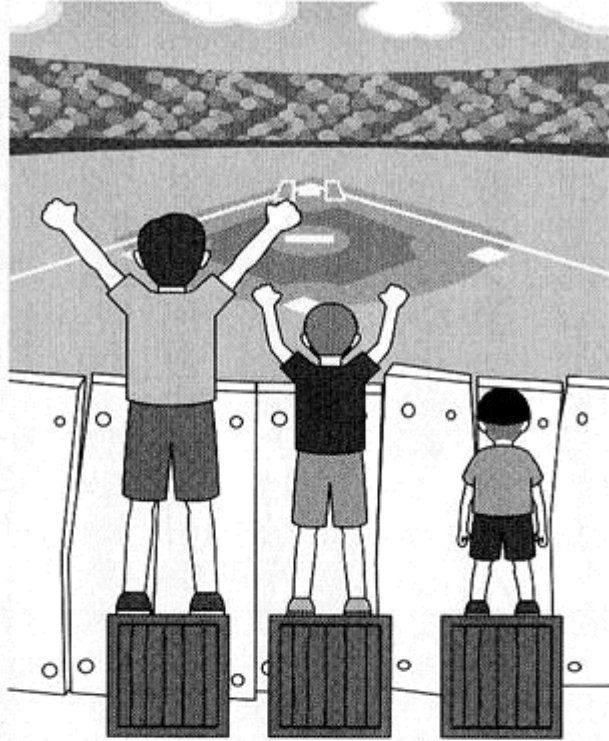
평등상속이 아닌 불평등(공평) 상속이라는 발상

법정상속분이라는 평등상속이 확산되고 있지만 상속은 불평등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불평등이란 공평함이 있는 분배를 말합니다. 아무리 불평등으로 나눈다고 말해도 불공평하다면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생깁니다.

그러면 평등과 공평(공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소개하겠습니다.

[도표7] 평등과 공평의 차이



평 등



공 평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평등이란 그림에서는 세 명의 아이들이 모두 같은 크기의 상자를 받아서 야구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상자를 한 개씩 받았으므로 평등한 것이지요. 하지만 키가 제일 큰 아이와 중간 키의 아이는 야구를 관람할 수 있지만 키가 제일 작은 아이는 보조 상자가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평이라는 그림에서는 키가 제일 큰 아이는 상자가 없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키가 가장 작은 아이에게 주어 상자 두 개를 쪼아 세 명 모두가 야구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에 맞게 보조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 이것이 공평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에 동의하시나요?

상속의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상속 유산분할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공감은 할 수 있지만 계산 방법을 납득할 수 없는 거겠지요. 이런 마음으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상속 다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불평등=공평(공정)을 목표로 하다

지금까지 봤듯이 상속인도 연령이나 경제 상황, 처한 입장이 모두 다릅니다. 한편 상속재산도 현금과 같은 나누기 쉬운 재산보다 부동산이나 사업 등 나누기 어려운 재산이 많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평등하게 나누는 것 자체가 어렵다면 불평등해도 공평함이 있는 분배방식이 이 책에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실제 저는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상속세 신고서를 봐왔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경우는 대부분 다툼을 계속한 결과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정상속분으로 나누는 평등상속은 현실적인 분배방식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은 평등하게 나누어야 한다’

이 세상은 흔히들 이 방식이 맞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잘 알아보면 상속재산도 다양하고 상속인도 각각의 사정이 있습니다. 평등하게 나눈다는게 오히려 도의적으로 어긋난 결과가 된다는 점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등한 분배가 법률상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점도 아셨을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평등하게 나누는 것은 사

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평등하게 나누면 나눌수록 모두가 불행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집을 지킨다라는 목표를 전제로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상속을 생각해야 합니다.

불평등이라고 하지만 불평등을 다시 말하면 공평입니다. 상속인 모두가 공평하고 납득이 가는 '상쾌한 상속'을 목표로 해봅시다.

[제4장] 불평등 상속을 실현하기 위한 다섯 가지 포인트

다섯 가지 포인트를 잘 지키면 불평등 상속을 실현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불평등 상속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평등상속을 고집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재산을 상속하는 방식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4장에서는 불평등 상속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다섯 가지 포인트를 소개하겠습니다.

포인트① 상속인을 알아보고 재산을 확인한다

불평등 상속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알아보고 재산을 평가하여 현주소를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상속인을 알기 위해 가계도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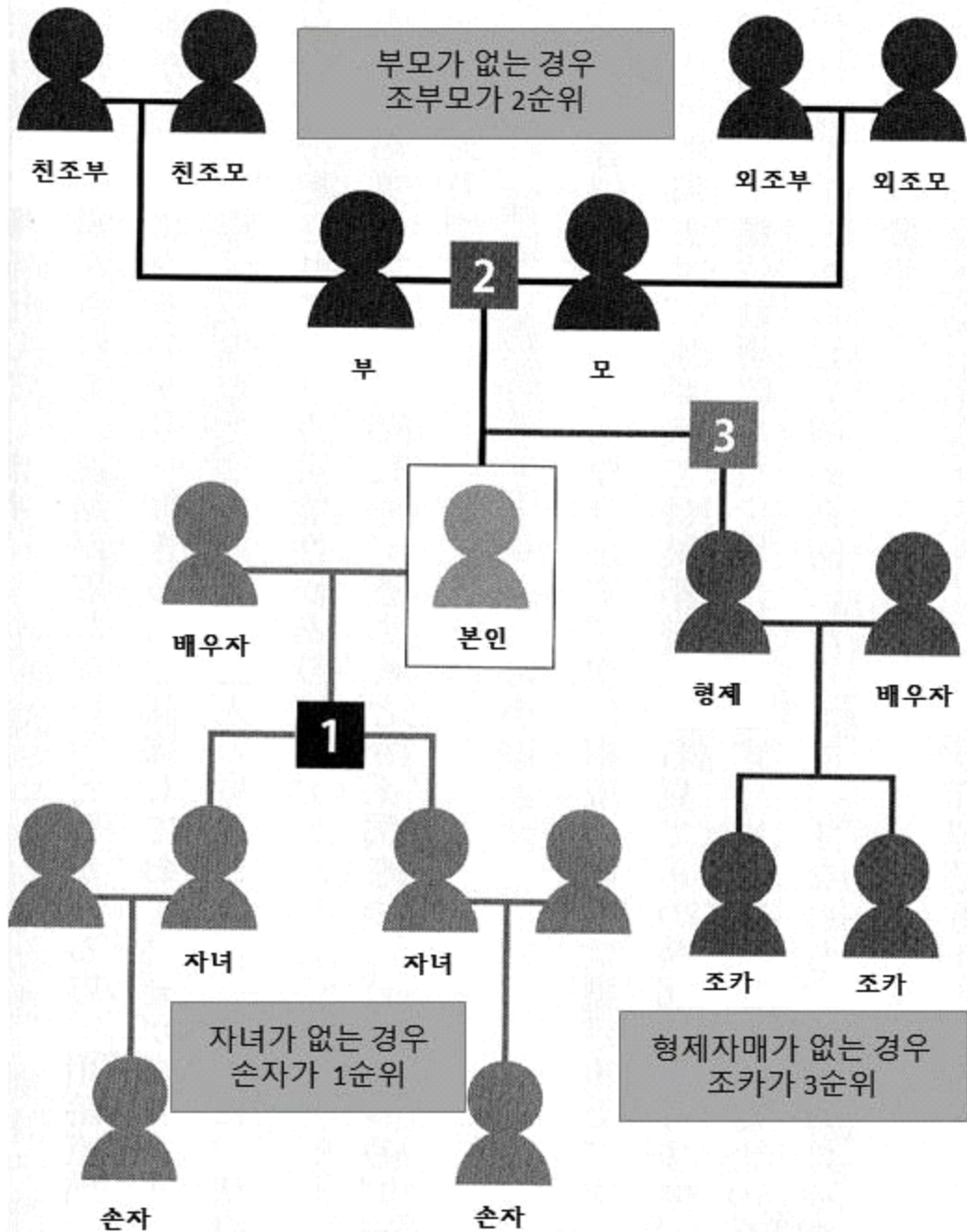
상속인 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건 조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배우자나 자녀의 유무, 이혼이나 재혼, 사별 등 현대는 가족관계가 복잡합니다.

여러 차례 이혼과 재혼을 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자녀가 있는 사람, 상속 직전에 결혼한 사람 등 누가 상속인이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제대로 인식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상속이 발생했을 때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다른 사람에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가계도를 작성합니다. 가계도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배우자는 반드시 상속인이 됩니다. 다음 상속 순위로는 수직상에 있는 계도가 중요합니다. 상속 1순위는 자녀와 손자입니다. 가계도에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위에 있는 계도입니다.

[도표8] 상속대책용 가계도의 예



다음으로 상속 2순위는 부모와 조부모입니다. 피상속인 기준으로 상위에 있는 계도입니다. 3순위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수평상에 있는 계도입니다. 즉 형제자매나 조카들입니다. (49페이지, 도표8 참조)

먼저 상속 1순위의 가계도를 그립니다. 자신과 배우자를 중심으로 자녀, 손주를 그려줍니다.

주의할 점은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지만 이혼을 하면 상속인이 될 수 없는데 자녀는 그 친권이 상대방에게 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속인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간과하면 상속재산 분배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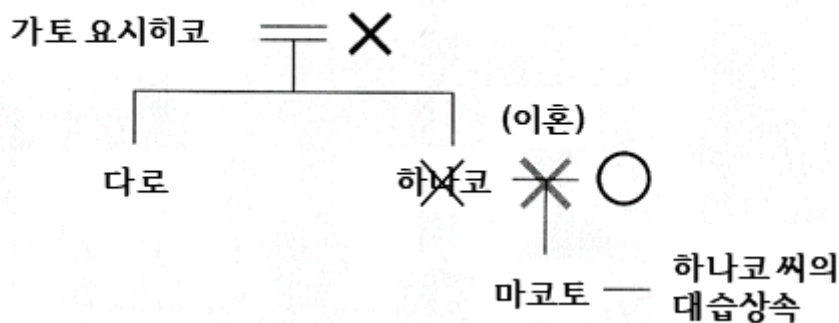
상속인 범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경험했던 예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습상속인, 이혼하고 친권을 빼앗긴 자녀의 사례

여러 사업을 경영하며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 가토 요시히코(가명/85세) 씨의 상담이었습니다. 이미 부인은 세상을 떠났고 가족은 장남인 다로 씨 한 사람 뿐이라고 했습니다. 상속대책에 대해 상담하러 왔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실행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에 가토 씨로부터 만일에 대비해 상속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의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상속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자녀가 한 명이었기에 간단한 절차라 생각하고 호적등본을 떼었는데 생각지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가토 씨의 가계도



가토 씨는 가족은 아들인 다로 씨 한 사람뿐이라고 했지만 호적상에는 15년 전에 사망한 하나코 씨라는 다로 씨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또 놀란 사실은 하나코

씨는 사망하기 5년 전에 결혼을 했었고 그해 출산을 하여 마코토 씨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코 씨는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혼을 했으며 이혼 사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혼한 남편과 상당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하나코 씨의 아버지인 가토 씨가 고액의 위자료를 지불했습니다. 친권은 상대방에게 빼앗겨 손주인 마코토 씨는 아버지 쪽으로 갔고 이후로는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의 충격이 컸던 탓인지 하나코 씨는 이혼한 후 바로 사망했습니다.

가토 씨는 하나코 씨가 오래전에 이혼하기도 했고 친권도 잃은 데다가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손주인 마코토 씨는 상속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상 마코토 씨는 가토 씨의 손주이고 하나코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하나코 씨를 대신해서 상속받는 대습상속인입니다. 저는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 마코토 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이상의 공백이 있어 찾아내는 데 고생을 했지만 결국 찾아낼 수 있었고 유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마코토 씨는 변호사를 동반하여 이후 모든 협의는 변호사를 통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코토 씨는 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법정상속분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코토 씨는 상속인이니까 법정상속분을 상속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가토 씨와 오랜 시간 만난 적이 없고 가토 씨의 마지막을 지켜보지도 못했으니 권리를 주장할 만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을 다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 평등상속(법정상속분)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가계도를 작성하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었으며 만약 미리 알았더라면 대응 방법을 달리 했을 것이라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가계도를 작성했다면 상속재산을 조사한다

가계도의 작성이 끝났다면 다음은 상속재산을 조사합니다. 상속재산의 종류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재산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는 먼저 플러스 상속재산과 마이너스 상속재산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플러스 상속재산은 부동산, 현금 및 예금, 유가증권(주식 및 투자신탁), 그 외 자산(대여금, 사망보험금, 사망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상속재산은 주로 차입금과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 등입니다. 차입금은 현금서비스 같은 소액 대출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수익형 부동산인 다세대 주택 건축 시 받은 대출 등 고액의 대출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거래처에서 외상으로 상품을 구입할 때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남습니다.

미지급금은 말 그대로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으로 단발적으로 발생하는 부채입니다. 예를 들면 광고 선전비나 매출할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이너스 상속재산 항목에서 누락되기 쉬운 것이 자신의 부채가 아닌 지인을 위해 연대보증을 해준 고액의 부채입니다.

이러한 부채는 빚을 진 사람이 경제적으로 파탄하지 않는 한 연대보증인에게 청구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상속 후 채권자로부터 연락이 와서야 비로소 피상속인이 부채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피상속인인 부모가 상속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대략적이라도 각각의 평가액을 산출해 둡시다.

1.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나 건물을 말합니다. 자택, 수익형 부동산, 주차장, 공장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평가는 건물과 토지를 각각 평가한 후 합산하여 부동산 평가액을 산출합니다. 주차장은 갱지로 평가합니다.

택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선가에 따라 상속세 평가액이 정해집니다. 노선가란 도로에 접한 택지의 1㎡당 평가금액을 말합니다. 노선가는 매년 국세청에서 7월 1일에 발표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노선가 지도, 평가배율표에서 참

조할 수 있습니다.

노선가 <http://www.rosenka.nta.go.jp>

자신의 주소를 알아보고, 그 부동산에 접한 노선가에 면적을 곱하여 평가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노선가가 정해지지 않은 장소의 평가는 배율방식이라는 고정자산세 평가액에 국세청이 내놓은 배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집의 평가액은 매년 봄에 지자체 관공서에서 알려주는 고정자산세평가액에 일정 배율을 곱해서 평가합니다. 이 배율이 현재 1.0배이므로 고정자산세 평가액이 그대로 상속세평가액이 됩니다. 고정자산세 평가액이 기재된 서류를 분실한 경우 소재지의 관공서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등 수익형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은 임대주택이 됩니다. 임대주택은 임차인의 권리(전세권 비율)만큼 평가액이 내려갑니다. 임대주택의 평가액은 고정자산세 평가액에서 전세권 비율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전세권 비율은 30%이므로 임대주택의 평가액은 고정자산세 평가액의 70%입니다.

토지는 임대주택 건부지로 평가되며 갱지의 평가보다 낮아집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주택 건부지 평가액 = 자용지⁷⁾ 평가액 × (1 - 지상권 비율 × 전세권 비율 30%)입니다. 토지 평가가 높게 나오면 지상권 비율도 달라지지만 대략적 계산으로 고정자산세 평가액의 80% 정도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고정자산세 평가에서 건물 5,000만 엔, 노선가 평가에서 토지 5,000만 엔, 합계 1억 엔의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의 평가액은 고정자산세 평가액의 70%입니다. 5,000만 엔의 70%는 3,500만 엔입니다. 임대주택 건부지의 평가액은 5,000만 엔의 80%로 4,000만 엔입니다. 이 다세대 주택의 상속세 평가액은 7,500만 엔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7) 역주. 토지의 소유자 외에 다른 사용 권리가 없는 땅. 토지 평가 산정의 기초가 된다.

2. 유가증권

유가증권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주식, 자사주식, 투자신탁 등이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거래시장의 시세가 있으며 실제 상속 발생일로부터 과거 3개월 동안 가장 낮은 값으로 산출하지만 일단은 현재 주가에서 평가를 합니다. 투자신탁은 증권회사에서 보내준 거래 레포트를 참고로 하면 됩니다. 평가가 어려운 건 자사주식입니다. 정식으로는 회사의 규모나 이익에 따라 순자산 가격과 유사업종 비준가격의 비율로 구하지만 대략적인 계산을 할 때는 회사 결산서인 대차대조표(Balance Sheet)의 순자산액을 기초로 자신의 보유비율을 통해 평가액을 참고로 알아 둡니다.

3. 그 외 자산

그 외 자산으로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외의 상속재산을 기재해 둡니다. 현금 및 예금, 사망보험금, 사망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단 사망보험금은 보험금 수령인인 상속인이 갖는 고유의 재산으로 간주상속재산이라 불리며 유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유산분할을 위한 재산 목록에 넣을지는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사망보험금 및 사망 퇴직금에는 상속세 계산상 각각의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500만 엔 × 상속인의 수'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세 명일 경우 비과세가 각각 500만 엔 × 3명 = 1,500만 엔이므로 사망보험금 1,500만 엔이며, 사망 퇴직금이 1,500만 엔 이하라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들지 않는 혜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도 포함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대여금도 물론 상속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자신과 가족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빌려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금 확보가 어려울 때 본인 회사에 돈을 대주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금액이 커지지만 본인 회사이기 때문에 신경을 크게 쓰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그 경우가 아니라면 액면가 그

대로 상속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른바 동족회사⁸⁾에 빌려준 대여금도 상속 재산에 들어갑니다. 상속 발생 전에 대여금을 해소하는 대책을 취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에 상당하는 생전 증여에도 주의하라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상속재산도 확인해 둡시다.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 중 누군가 생전에 거액의 증여를 받아서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그 상속인의 상속재산 취득분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거액의 증여를 받아서 특별이익을 받은 경우 법정상속분으로 유산분할을 하지 않고 특별수익이 있는 상속인의 취득분을 줄임으로써 공평성을 유지합니다.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결혼이나 양자결연으로 행하는 증여

결혼식 지참금, 준비금, 혼수 등 양자결연 시 거주용 집 제공 등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생전 증여입니다. 예단이나 결혼식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생계 자본으로서 증여

창업시 사업 자금이나 주거를 신축할 때 비용 지원, 부동산이나 토지의 증여, 대학이나 유학을 위한 학비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수만 엔 정도의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평가되지 않고 단순한 생활 지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돌봄에 드는 비용을 수치화하라

8) 역주. 일정 주주와 동족 관계자가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집안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부모님을 돌보아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부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주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가 결혼하여 모두 독립하고 장남이나 장녀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이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돌보아야 할 정도로 부담이 커진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자녀 모두에게 부양의무가 있고 부모님을 돌보는 일도 자녀가 평등하게 갖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장남이나 장녀가 금전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돌보는 비용으로 부모님의 예금이나 현금을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는 다른 형제자매들은 부모님의 통장 잔액만을 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이 발생한 후에 꼭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누가 집안을 지탱하고 누가 부모님을 주도적으로 돌볼 것인가를 정하며 돌봄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록해 둘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번 민법 개정에는 상속인이 아니어도 부모를 돌보는 데 기여한 친척, 예를 들어 같이 살고 있는 며느리 등 그 기여도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청구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출 방법이라는 과제는 남아 있지만 돌봄에 대한 대가도 제대로 고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면 퇴직금까지는 아니어도 그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

권호근, 임윤수, 최승영(2020), 『부동산 감정평가론』, 형설출판사

김계형, 이재호(2019), 『생활 속 법률상식 사전(2019)』, 길벗

김성철(2019), 『행복한 증여 상속』, 지식너머

법무법인 송인(2020),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담담사무소

부동산용어집 <https://www.homes.co.jp/words>

신방수(2020), 『상속분쟁 예방과 상속 증여 절세비법』, 매일경제 신문사

일본 위키피디아 <https://ja.wikipedia.org/>

지원림(2020), 『민법강의』, 흥문사

최필주(2020), 『이해하기 쉬운 부동산 개발사업』, 생각나눔

日本語抄録

現代の社会は、かつてないほど平等を求めている。相続においても平等に分けないと、すっきりしないのである。平等に相続する最もよい方法は、民法で定める法定相続分である。しかし、その法定相続分も公平であるとは限らない。本書では、法定相続分のような平等な分け方にどのような弊害があるのか詳しく説明する。

親世代が子供に相続や贈与を行う時、最も大きい悩みは税金である。例えば、資産家が相続税を減らすために、更地に建物を建築して貸家にしたとする。貸家にした分、その割合で土地の評価額が低くなり、相続税は下がる。しかし、実際相続が発生した時、節税対策として始めた賃貸事業によって予想外の問題が出てくる。本書では、具体的に失敗例を取り上げながら、大事な財産が守られるようアドバイスする。

その方法として、不平等な相続を強調するが、同時に公平な相続を目指す。被相続人が亡くなる前に、相続人の貢献度や目に見えない負担や費用を見える化し、家を継ぐ相続人に不平等でありながらも、公平に分けるように呼びかける。相続人の全員が公平だと納得できる、揉めない相続を目指すのである。